

## 14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

- 11월 15일까지 불법 튜닝, 대포차 등 자동차·이륜자동차 일제단속  
... 경찰청, 지자체 등 합동 단속으로 불법 없는 교통환경 조성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올해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\*에 이어, 하반기에도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, 경찰청,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.

\* 상반기 일제단속 : '24.5.20. ~ 6.21(한 달간), 행정안전부, 경찰청, 지자체 등 합동

-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에 불법자동차 총 17.8만여 건을 적발하였으며, 번호판 영치(54,853건), 과태료 부과(11,233건), 고발조치(4,202건) 등 처분을 완료\*하였다. \* 세부내용 참고파일 첨부

- 작년('23년) 상반기보다 적발건수는 1.2% 늘어났다. 특히, 올해 불법 등화장치 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적발건수는 62,349건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51.17% 크게 늘어났다. 무단방치 자동차 적발건수도 소폭(4.72%) 늘었다.

- 지난 5년간\* 적발건수(평균 28.9만 건)와 비교할 때, 적발건수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. 이러한 배경에는 불법자동차를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앱\*\* 개통('23.4월) 등 신고·제보가 간편해진 것도 이유로 볼 수 있다.

\* 적발건수: '19년 30.8만 → '20년 25.0만 → '21년 26.8만 → '22년 28.4만 → '23년 33.7만 → '24년.1 17.8만

\*\* 올해 상반기 안전신문고를 통한 적발(조치)건수 8.9만건(총 신고건수 17.0만, 처리중 4만)

-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일제단속에서도 안전기준 위반, 무단방치 자동차를 계속 단속하고,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 등 불법 이륜자동차, 불법명의 자동차(속칭 대포차) 등 집중단속을 시행한다. 이로써 안전하고 불법 없는 교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.

○ (이륜자동차 단속 강화) 국민 불편이 많은 미신고(번호판 미부착) 운행, 불법 튜닝 등 불법 운행 이륜자동차에 대한 경각심 강화를 위한 단속을 강화한다.

○ (불법명의 자동차) 무등록 운행, 타인명의 운행 자동차의 처벌강화\* 법률 개정('24.5.21. 시행)에 따른 경각심 제고를 위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.

\* (무등록)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→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
 (타인명의)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→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

□ 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“안전한 교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불법 자동차 단속이 우선되어야 한다”라며,

○ “불법자동차의 처벌은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명확한 제보와 신고를 통해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, ‘안전신문고’를 이용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 드린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총괄>	모빌리티자동차국	책임자	과장	배소명 (044-201-3855)
	자동차운영보험과	담당자	사무관	황선일 (044-201-3860)
<안전신문고>	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	책임자	과장	지용구 (044-205-4210)
		담당자	사무관	이재훈 (044-205-4226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
**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**



**참고 1**

**‘24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주요 위반행위별 단속내역**

□ '23년 상반기 대비 '24년 상반기 단속실적

(단위 : 건, %)

구 분	'24년 상반기	'23년 상반기	증감(%)
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	20,659	21,309	▽ 3.05
안전기준 위반(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)	62,349	41,244	▲ 51.17
불법튜닝(화물자동차 적재장치 및 소음기 불법 변경 등)	7,515	8,805	▽ 14.65
불법명의 자동차 단속(이전등록 위반자)	1,737	2,219	▽ 21.72
무단방치 자동차 단속	29,668	28,330	▲ 4.72
무등록 자동차 단속	1,513	2,348	▽ 35.56
번호판 영치실적	54,853	71,930	▽ 23.74
소 계	178,294	176,185	▲ 1.20

□ '24년 상반기 단속결과 조치현황

(단위 : 건)

구 분	적발대수	과태료 (범칙금)	고발
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	20,659	4,295	980
안전기준 위반(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 미부착 등)	62,349	3,145	1,097
불법튜닝(화물자동차 적재장치 및 소음기 불법 변경 등)	7,515	1,051	741
불법명의 자동차 단속(이전등록 위반자)	1,737	1,592	3
무단방치 자동차 단속	29,668	-	1,257
무등록 자동차 단속	1,513	1,150	124
번호판 영치실적	54,853	-	-
소 계	178,294	11,233	4,202

## 참고 2

## 안전신문고 앱 '자동차·교통위반' 신고방법

### ① 안전신문고 앱 실행 → 자동차·교통위반 메뉴 및 유형 선택

안전신문고 앱 실행 후 '자동차·교통위반' 메뉴를 선택하고 '유형선택' 버튼을 클릭합니다.

### ② 신고유형 선택

신고유형 선택 화면에서 '불법등화, 반사판(지) 가림·손상'을 선택합니다.

### ③ 신고 요건 및 방법 안내

신고 요건 및 방법 안내 화면입니다.

- ① 등화 착색, 등화 손상, 불법등화 설치  
ex) 방전식 전조등, LED 전도등, 써치램프, 보조제 동등 추가설치, 등화장치 착색, 필름부착 등
- ② 화물차 후부 반사판(지) 미설치 및 설치 불량
- ③ 화물차 측면보호대 불량

화물차 후부 반사판(지) 미설치 및 설치 불량, 화물차 측면보호대 불량에 대한 예시 사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
### ④ 사진·동영상 첨부 후 제출

신고 요건 및 방법 안내 화면에서 '제출'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.